나는 하국 판뉴딜	보도자료	작성과	복구지원과
행정안전부	2021년 6월 18일(금) 조간 (6. 17. <mark>14:30</mark>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최병진 사무관 김준기 세부소관 <참고1>
		연락처	044-205-5310 044-205-5314

###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 추가 -

- □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6.17)에 상정 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 \* ('06년) 1종  $\rightarrow$  ('13년) 5종  $\rightarrow$  ('14년) 7종  $\rightarrow$  ('15년 $\sim$ ) 15종
- □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하였다.
    - ※ (경과) 지자체 회의(2.25), 부처·기관 회의(4.2, 4.28),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상정·확정(6.17)

-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 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 □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 \*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 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 □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 1 신규 간접지원 항목별 소관 기관 및 담당

항 목	소 속	부 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7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재해손실 공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00-3166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3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79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044-200-84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4
TV수신료 면제 (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8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특별재난지역)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특별재난지역)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 참고 2 간접지원 총괄표(기존+확대)

구분	지유	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초장 91월까지 장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제6조 「국세징수법」제13조	
2		세 납세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수도법」 제38조, 「하수도 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3	복구	농업 어업 산림	농협5년거치 10년상환연리 1.5%수협5년 거치 10년 상환연리 1.5%산림5년 거치 20합연리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자금 융자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재난안전법」	
		중소기업 소상 <del>공</del> 인	일반은행 2년 거치 연리 2.0% 중소벤처기업 2년 거치 진흥공단 3년 상환 연리 1.9%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6		훈대상 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기계 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del>복구를</del>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등	
9		역의무 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제61조	
10	(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이번 확대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제14조, 시행령 제14조	이번 확대
12	재해선	<b>손실 공제</b> 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b>이번 확대</b> (개별원영황)
13		<b>징수유예</b> 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이번 확대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4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이번 확대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이번 확대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이번 확대
17	<b>공공임대 주거</b> <b>지원</b> (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	<b>이번 확대</b> (7별원(황
18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早期上下月)
19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早野北下月)
20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旱地下月
21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 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2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 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특별새 토무
23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병역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旱熱化)
24	<b>전파사용료 감면</b> (과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제67조, 시행령 제89조	이번 확대   (7/世紀)   (7世紀)   (本)
25	<b>우체국예금</b> <b>수수료 등 면제</b> (우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제16조, 제50조	이번 확대 (특별자는 자연
26	<b>TV수신료 면제</b>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이번 확대 (특별자는 자연
27	<b>고용 산재보험료</b> <b>경감</b> (고용)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이번 확대
28	<b>농지보전부담금</b> <b>면제</b> (농식품)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총면적이660m이하인경우만해당	「농지법」제38조, 시행령 제52조	이번 확대
29	<b>국민건강보험료</b> <b>연체금 경감</b> (복지)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이번 확대

### 참고 3

## **인포그래픽**(카드뉴스)











